

진료과:

주진단명: ☒ Deep vein thrombosis NOS

F / 69y

v-ASO bypass 수술동의서

수술명		Bypss(graft) vascular NOS	
참여 의료진	주치의 (집도의1)	(이름:) ☒ 전문의(전문과목: 흉부외과) ☐ 일반의(진료과목:)	
	주치의 (집도의2)	(이름:) ☐ 전문의(전문과목:) ☐ 일반의(진료과목:)	
시행예정일			

* 수술참여 집도의가 다수인 경우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치의(집도의1,2) 기재란 기재요령: 주치의(집도의 1) 항목에는 환자의 주치의(집도의) 경보를 기재, 주치의(집도의 2) 항목에는 당해 수술 시술 등에 있어 주치의(집도의 1) 이외에 추가적으로 주치의의 역할(주된 수술역할 등)을 담당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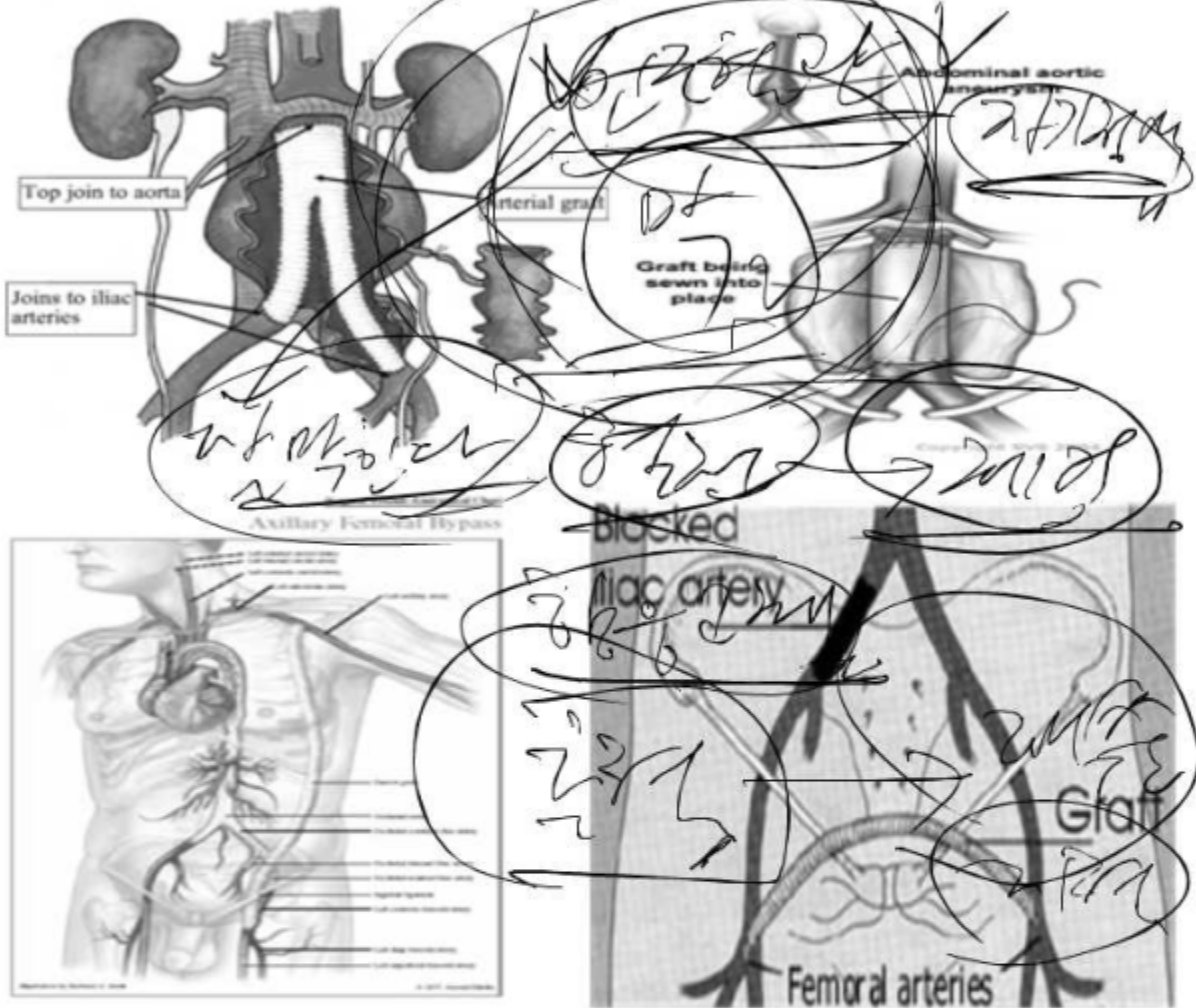
1. 환자의 현재 상태(검사결과 및 환자의 고지에 따라 유/무/미상으로 나누어 기재)

과거병력 (질병·상해 전력)	☒ 없음 ☐ 있음 ☐ 미상 ()	알레르기	☒ 없음 ☐ 있음 ☐ 미상 ()
특이체질	☒ 없음 ☐ 있음 ☐ 미상 ()	당뇨병	☒ 없음 ☐ 있음 ☐ 미상 ()
고혈압	☒ 없음 ☐ 있음 ☐ 미상 ()	마약사고	☒ 없음 ☐ 있음 ☐ 미상 ()
복용약물	☒ 없음 ☐ 있음 ☐ 미상 ()	기도이상 유무	☒ 없음 ☐ 있음 ☐ 미상 ()
흡연여부	☒ 없음 ☐ 있음 ☐ 미상 ()	출혈소인	☒ 없음 ☐ 있음 ☐ 미상 ()
심장질환 (심근경색증 등)	☒ 없음 ☐ 있음 ☐ 미상 ()	호흡기질환 (기침·가래 등)	☒ 없음 ☐ 있음 ☐ 미상 ()
신장질환 (부종 등)	☒ 없음 ☐ 있음 ☐ 미상 ()	기타	☒ 없음 ☐ 있음 ☐ 미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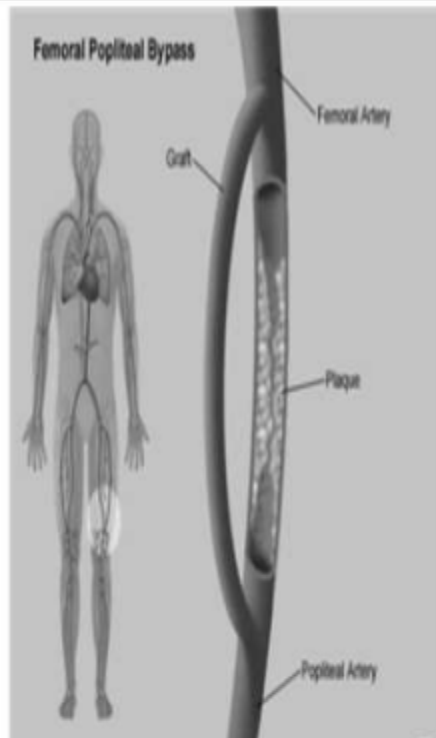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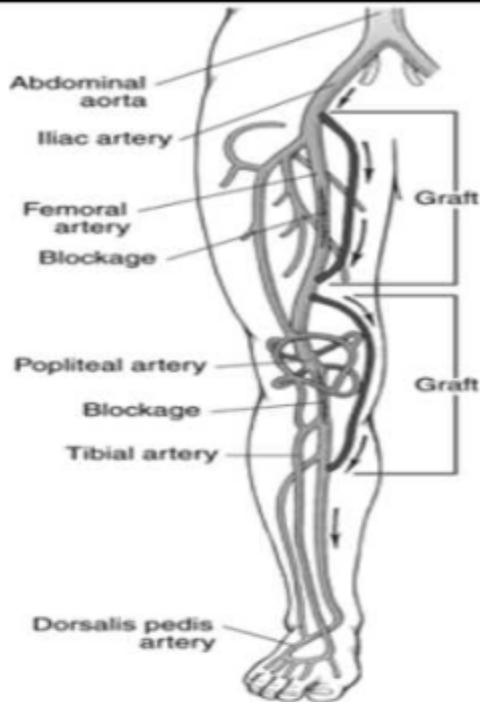
2. 수술의 목적 및 효과

동맥의 폐쇄로 인해 상지나 하지로 혈류 공급이 되지 않는 경우, 자가혈관이나 인조혈관을 이용하여 혈관 우회로 조성을 시행하여 상지나 하지 말단으로 동맥의 혈액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3. 수술의 과정 및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



220363365	하점미	F / 69y	주민등록번호: 530604 - 2*****
-----------	-----	---------	-------------------------



4. 수술의 관련 주의 사항

- 1) 금연
- 2) 술 전 항응고제, 항혈소판제제의 복용중단 : 담당의와 상의

5. 수술의 발생 가능한 합병증(후유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방법

- 1) 재발 가능 수술 → 재발 → 시술 혹은 재수술
- 2) 혈관 질환은 궁극적인 치료는 아니며 완화시키는 것이며 질병이
- 3) 환자의 생활 관리(금주, 금연, 포그려 앉는 등 혈관에 무리를 주는 자세 금지), 규칙적인 복용이 따르지 않는 경우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재발할 수 있다.
- 4) 환자의 특이 체질에 따라 시술 성공 후에도 빠른 시간 안에 재발이 가능하다고 예상할 수 있다. 재발이 반복될 수 있다.
- 5)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환자실로 갈 수 있고, 사망할 수 있다.
- 6) 재발할 경우 시술이 재수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망 전 최종경과는 절단이다.
- 7) 재관류 증후군, 하지 부종 등이 생길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막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의 피부를 잘라 압박으로 인한 조직괴사를 막는 시술)
- 8) 특히 재관류 증후군(이전과 다르게 많은 양의 피가 갑자기 흐르면서 나타나는 시술 부작용)의 경우 근육에서 BUN, Creatine(신장에서 배설되는 체내 독소, 배설물) 등이 다량 배출되고 칼륨수치가 증가하여 신부전, 심정지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9) 시술 중 발생한 혈전으로 인해 폐색전증, 심근경색, 뇌경색 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뇌척수로 가는 혈관을 막을 경우 사지마비가 나타날 수 있다. 체내 어느 장기로 그 장기로 가는 혈관을 막아 그 장기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
- 10) stent 시술의 경우 stent에 감염이 일어나면 패혈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
- 11) 모든 부작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사망할 수 있다.

■ 수술에 의한 일반적인 합병증

1) 출혈

- ① 수술 중 출혈 : 소량출혈 → 지혈, 회복
 대량출혈 → 저혈압, 저혈량 쇼크-주요장기: 뇌(뇌사, 중풍), 간(간부전),
 신장(신부전), 심장(심근경색) 등 약 손상, 사망
 수혈, 대량수혈 → 수혈 부작용, 거부반응
- ② 수술 후 출혈 : 재수술(지혈 및 교정 위해), 제반 합병증 및 사망률 증가

2) 감염

- ① 창상감염, 피하 조직 감염, 근육 및 인대 감염, 혈관염, 패혈증(전신감염, 이 경우 감염으로 사망 가능) 등
- ② 전신마취에 의한 폐렴 : 병동에 올라 온 이 후에도 생길 수 있으며, 인공호흡기 치료가 시행될 수 있으며, 급성 호흡부전 증후군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망할 수 있다. 수술 후 기침, 인후통, 가래배기기가 매우 중요하다. 수술 후 첫 24시간의 발열은 무기폐가 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으며 무기폐가 지속되면 폐렴, 농흉으로 진행할 수 있다.
- ③ 복부대동맥류 수술의 경우 복막염 등 복부 감염이 올 수 있으며, 인공혈관에 감염이 진행될 경우 사망한다. (100%)
- ④ 예방적 항생제 사용 : 수술 전, 후
- ⑤ 발열이 있고 혈액검사 상 백혈구, 염색수치가 증가할 경우 영양실 항생제 치료를 시행한다. 균 배양검사를 시행하여 균이 배양되면 그에 알맞은 항생제를 사용하며, 배양된 균이 대장균이나 병원균일 경우 더 강력한 항생제를 사용해야 하나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패혈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
- ⑥ 중환자실에 오래 입원하거나, 이 전에 항생제 사용이 빈번했던 경우 MRSA(메티실린 내성균), VRE(반코마이신 내성균)에 감염될 수 있다. 이 균이 감염의 주요 원인이 아닐 경우에는 환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없으나 병동에서 격리될 수 있으며, 이 후 감염의 원인이 될 경우 항생제 치료에 신중하여야 한다.
- 3) 동증 : 진통제로 조절, 참지 말 것.
- 4) 수술 후 증후군 : 몸살, 미열 : 1~2일 후 회복
- 5) 혈관손상, 장기 손상, 신경손상 : 출혈, 감염, 근육/피하조직/인대 등의 손상, 신경학적 손상 (다리의 이상감각, 동증, 저림, 움직임의 제한), 복부대동맥류 수술의 경우 신장, 대장, 소장, 신장, 요로, 척추, 척추 신경 등 후복부의 모든 장기가 손상 가능하며 그 기능에 치명적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망할 수 있다. 신경손상의 경우 하지마비, 사지마비, 혼수 등이 올 수 있다.
- 6) 재발 (위 설명 참고)

6. 수술의 시행되지 않았을때의 결과

증상 악화, 하지 절단, 괴사 부위 감염에 의한 패혈증 및 패혈증에 의한 사망.

7. 수술 이외의 시행 가능한 대체방법

약물치료, 대증적 치료

8. 수술(시술, 검사, 치료)의 방법 변경 또는 수술(시술, 검사, 치료) 범위의 추가 가능성

수술(시술 검사 치료 수혈 항암화학요법)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술(시술 검사 치료 수혈 항암화학요법)방법이 변경되거나 수술범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추가로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시술 검사 치료 수혈 항암화학요법)의 시행 전에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합니다.

다만, 수술의 시행 도중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수술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 범위의 추가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수술의 시행 후에 지체 없이 그 변경 또는 추가의 사유 및 수술의 시행결과를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설명하도록 합니다.

9. 수술(시술, 검사, 치료)의 주치의(집도의) 변경 가능성과 사유

	F / 69y	주민등록번호:	
--	---------	---------	--

수술(시술·검사)과정에서 환자의 상태 또는 의료기관의 사정(응급환자의 진료, 주치의(집도의)의 질병·출산·휴가·학회 등 일선상 사유, 기타 변경사유:)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치의(집도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술(시술·검사)의 시행 전에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얻도록 합니다. 다만, 수술의 시행 도중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집도의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수술의 시행 후에 지체 없이 구체적인 집도의의 변경 사유 및 수술의 시행결과를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설명하도록 합니다.

10. 학술 연구 자료로서의 사용

본 수술(시술·검사·치료·수술·항암화학요법) 결과는 학술 연구 자료로 이용될 수 있고, 이 때 익명성은 확실히 보장합니다.

나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 ① 나(또는 환자)에 대한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 치료, 수혈, 항암)의 목적·효과·과정·예상되는 합병증·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필요시 별지 포함)을 의사로부터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 ② 이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 치료, 수혈, 항암)로서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 체질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위 ①의 설명으로 이해했음을 확인합니다.
 - ③ 이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 치료, 수혈, 항암)에 협력하고, 이 동의서 제1조의 환자의 현재 상태에 대해 성실하게 고지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따른 의학적 처리를 주치의의 판단에 위임하여 이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 치료, 수혈, 항암)을 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④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 치료, 수혈, 항암) 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범위의 추가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이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 치료, 수혈, 항암)의 시행 전에 의사로부터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 ⑤ 주치의(집도의)의 변경 가능성과 사유에 대한 설명을 이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 치료, 수혈, 항암)의 시행 전에 의사로부터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 * 의사의 상세한 설명은 이면지 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동의서에 첨부함)
 - * 환자(또는 대리인)는 이 동의서 또는 별지 사본에 대한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교부하도록 합니다. 단, 동의서 또는 별지 사본 교부 시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수술(검사, 시술) 후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추가로 특수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본 동의서는 환자 본인에 의한 동의(서명)를 우선으로 하며, 본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서약이 불가능할 때에는 환자가 지정한 또는 법적대리인이 서명하도록 한다.

※ 환자, 대리인, 연대보증인(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이 각자 제출(첨부)하여야 할 서류(다음 중 하나에 의함)

1. 주민등록증 사본
2. 운전면허증 사본
3. 여권 사본
4. 외국인등록증 사본
5. 환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본 또는 사본)
6. 기타 대리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또는 문서(원본 또는 사본)

※ (유의사항) 환자 등은 위 서류를 첨부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 중 뒷자리 숫자 7개가 인식될 수 없도록 제출하여야 함(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서는 안 됨). 만약, 제출되는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병원은 뒷자리 숫자 7개가 인식될 수 없도록 조치하여 함

v-ASO bypass 수술동의서

	F / 69y	주민등록번호:	
--	---------	---------	--

● 대리인이 서명하게 된 사유

- ☐ 환자의 신체 &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약정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함
- ☐ 미성년자로서 약정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함
- ☐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함
- ☐ 환자 본인이 승낙에 관한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함
- (이 경우 별도의 위임 계약서를 본 동의서에 첨부 하여야 합니다.)

☐ 기타 : _____

설명 의사 : 허업

- ☐ 구두동의
- ☐ 무연고자

환자 : 하점이

라 점 이

환자와의 관계 :

☐

보호자(법정대리인)서명 :

(서명)

생년월일(법정대리인) :

연락처 : 010-